

<b>의안 번호</b>	<b>1375</b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상위법령 제·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】</p> 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토 보 고 서</h2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6. 30.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7. 3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7. 11.(화)

### 2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령 제·개정, 현실에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확보
- 나. 조례 25건의 공통 정비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도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 정비
  - 1) 자유발명 ⇒ 개인발명(안 제5조)
  - 2) 전염병 ⇒ 감염병
  - 3) 활동보조서비스 ⇒ 활동지원급여(안 제10조)
  - 4) 국토해양부령 ⇒ 국토교통부령(안 제19조)
  - 5) 자연재해위험지구 ⇒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(안 제20조)
  - 6) 「건설기술관리법」 ⇒ 「건설기술 진흥법」(안 제22조)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  - 1) 해축 ⇒ 위축 해제, 통할 ⇒ 총괄, 사망·질병 ⇒ 질병
  - 2) 중구의회 의장이 ⇒ 중구의회가

### 4. 근거법규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발명진흥법」, 「주민등록법」
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정부조직법」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·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,
-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등 25건의 조례안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.

## 일괄개정 조례 목록

구 분	조 례 명	소관부서	비고
제 1 조	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	기 획 예 산 실	p10
제 2 조	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“	p10
제 3 조	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· 운영에 관한 조례	총 무 과	p11
제 4 조	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	“	p11
제 5 조	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	“	p12
제 6 조	울산광역시 중구 통 · 반 설치 조례	자 치 행 정 과	p13
제 7 조	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	평 생 교 육 과	p13
제 8 조	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·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	자 치 행 정 과	p14
제 9 조	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사 회 복 지 과	p14
제10조	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	“	p14
제11조	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	여 성 청 소 년 과	p16
제12조	울산광역시 중구 아동 ·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	“	p16
제13조	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	경 제 일 자 리 과	p17
제14조	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	“	p18
제15조	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	“	p18

구 분	조 례 명	소관부서	비고
제16조	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	환경미화과	p19
제17조	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	“	p19
제18조	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	건설과	p20
제19조	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	“	p20
제20조	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	안전총괄과	p21
제21조	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	“	p24
제22조	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“	p25
제23조	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	도시과	p25
제24조	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	“	p26
제25조	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시공사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디자인건축과	p26

## 상위법령 제·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개정안

### 중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p14

개 정 안	수 정 안	비 고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민등록법」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주민등록법」 제36조(삭제)----- ----- -----.	법제처의 알뜰한 기령에 수정 에 필요

### 중구 불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p18

개 정 안	수 정 안	비 고
제7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·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.	제7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 질병이나 그 밖의 ----- ----- -----.	법제처의 알뜰한 알기 쉬운 법령 준에 수정 필요

###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p21

개 정 안	수 정 안	비 고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----- ----- -----.	※ 법령명 앞뒤 낫표「」삽입

**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25**

개 정 안	수 정 안	비 고
<p><b>제5조(위험도 평가단 구성·운영 및 자격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④ 중구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33명 이하로 구성하여 “중구위험도평가단원”으로 등록·관리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 「<u>건설기술진흥법</u>」에 의한 건축·토목·안전관리(건설안전)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2. ~ 3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⑤ ~ ⑥ (생략)</p>	<p><b>제5조(위험도 평가단 구성·운영 및 자격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④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1. 「<u>건설기술</u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u>진흥법</u>」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2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	<p>※ 법령명                       띄어쓰기</p>